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3두33825 보험급여(유족급여장례비청구) 불승인 결정

원고, 상고인 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원고들 주소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고,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. 1. 18. 선고 2022누22378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23. 5. 18.

재판장

대법관

대법관

주 심

대법관

대법관

정본입니다.

2023. 5. 18.



대법원

법원사무관

